

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이명수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5524
--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17. 2. 9.

발 의 자 : 이명수 · 권석창 · 홍문표

함진규 · 정태옥 · 한선교

경대수 · 박찬우 · 성일종

강효상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 제2조제1호아목에서 “「한국정책금융공사법」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”로 규정되어 있는데, 이 중 「한국정책금융공사법」은 2014년 폐지되었고, “한국정책금융공사”도 “한국산업은행”에 합병되어 소멸된 기관임에도 여전히 규정되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음.

이에 제2조제1호아목의 규정을 삭제하여 국민들의 혼란을 없애고자 함(안 제2조제1호아목).

법률 제 호

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아목을 삭제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“금융회사등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</p> <p>가. ~ 사. (생 략)</p> <p>아. 「한국정책금융공사법」 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 자. (생 략)</p> <p>2. ~ 4. (생 략)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 1. ----- ----- -----.</p> <p>가. ~ 사. (현행과 같음) <u><삭 제></u></p> <p>자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~ 4. (현행과 같음)</p>